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어업의 종류	어업의 명칭	어선의 규모	
		구 톤수	톤수
원양연승어업	원양참치연승어업	150톤 이상	110톤 이상
	원양저연승어업	80톤 이상	60톤 이상
원양기선저인망어업	원 양 기 선 저 인 망 어업	80톤 이상	60톤 이상
원양트롤어업	원양트롤어업	80톤 이상	60톤 이상
원양선망어업	원양선망어업	500톤 이상	350톤 이상
원양자망어업	원양자망어업	80톤 이상	60톤 이상
원양봉수망어업	원양봉수망어업	80톤 이상	60톤 이상
원양채낚기어업	원양채낚기어업	80톤 이상	60톤 이상
원양통발어업	원양통발어업	90톤 이상	60톤 이상
원양모선식어업	모선식트롤어업	모선 : 80톤 이상 부속선 : 40톤 이상 탐재식어로선 : 10톤 이상	모선 : 60톤 이상 부속선 : 30톤 이상 탐재식어로선 : 7톤 이상
	모선식외줄낚시어업	모선: 80톤 이상 부속선: 톤수 제한 없음 탐재식어로선 : 톤수 제한 없음	모선: 60톤 이상 부속선: 톤수 제한 없음 탐재식어로선 : 2톤 이하
원양안강망어업	원양안강망어업	80톤 이상	60톤 이상

비고 : 구 톤수는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현존선(現存船)에 관하여 종전의 예에 따라 측정된 톤수를 말한다.